



2022년 2월 최신화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산업통상자원부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2년 2월 최신화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산업통상자원부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 책자는 '22년 2월 1일 현재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검토 시점에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I

| 중견기업이란?

| | |
|---|----|
| 1. 중견기업 범위 | 3 |
| 2. 중견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 11 |
|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 11 |
| ② 자산총액 기준 | 15 |
|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초과) | 19 |
| 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20 |
|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23 |
| 4. 중견기업 제외대상 | 40 |
| ①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40 |
|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의 피출자기업 | 44 |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55 |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6 |

II

중견기업 확인

| | |
|--|----|
| 1.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 | 63 |
| ① 확인서 발급대상 | 64 |
| ② 확인서 발급절차 | 65 |
| ③ 신청·관계기업 제출서류 | 66 |
| ④ 확인서 유효기간 | 68 |
| 2. 특례대상 중견기업 | 73 |
| 3.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76 |
| ① 중소기업 유예기간 | 76 |
| ②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 78 |
| 4. 기타 중견기업 관련 개념 | 81 |
| ①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 81 |
| ②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 82 |
|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83 |
|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84 |
|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85 |

III

중견기업 후보기업

| | |
|-------------------|----|
| ▶ 중견기업 후보기업 | 89 |
|-------------------|----|

[중소기업·중견·대기업 비교(요약)]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주요 제외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중소(유예)기업, 대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 - |
| 기준 조건 | 4개 모두 충족(AND) | 4개 중 1개 충족(OR) | 2개 중 1개 충족(OR) |
| 규모기준 |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 |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 독립성 기준 |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
| |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 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 |
| 확인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집단 편입 및 제외 공문 |
|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
| 담당 및 문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www.mss.go.kr)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 |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I. 중견기업이란?

1. 중견기업 범위
2. 중견기업 규모 기준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4. 중견기업 제외대상

I. 중견기업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중견기업 범위

-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 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①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 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대출자자에서 제외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⑥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 ⑧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개인사업자)**입니다.

- 단,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는 외국 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Tip 예시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사설학원, 개인병원),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Tip 예시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 법인·재단법인·비영리 특별법인 등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분배(배당)할 수 있으면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설립 근거에서 비영리성(공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합니다.

Tip 예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 금고(연합회), 대한염업조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 제외대상 등에 대해서는 본 범위해설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중견기업법」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운영 중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중견기업 확인서의 신청·발급, 지원정책 및 사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삭제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주하는질문(FAQ)

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에 해당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4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5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6 사회복지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7 지방공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 개정(16. 8. 30.)에 따라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8 특수목적회사(SPC*)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중견기업법」상 범위를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

Q 9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아니오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 원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10 지주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일반지주회사만 가능)

→ 지주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며,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지주회사의 주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에 해당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견기업법」상 범위를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11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12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입니다.

Q 13 외국법인은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고 「중견기업법」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14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은 각각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15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범위를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견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세부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중견기업 기준을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등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견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에 상관없이(금융 및 보험업 제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Tip** 1.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의 택일주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만 존치하고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 원, 자산총액 5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천5백억원 등 네 가지 상한기준은 폐지하였습니다.

-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였습니다.

- Ti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22. 수도업 | E36 | |
| 23. 건설업 | F |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 (E36 제외) |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 N (N76 제외) |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 42. 부동산업 | L | |
| 43. 임대업 | N76 |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의 판단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모기향을 만드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모기향’을 검색하면, 분류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분류기호 20321)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분류기호 중 앞에 두 자리(20)가 중분류 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코드 ‘C’를 앞에 붙여 분류기호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됩니다.

Tip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입니다.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를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합니다.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간주합니다.

Tip 1. [별표1]을 적용할 때는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아닌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2012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규모기준이 낮게 설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관계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주된 업종 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주된 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Tip 1. 2015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상한기준 중에 하나인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에서의 3년 평균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며, 개정 법령에서의 업종별 규모 기준인 ‘평균매출액등’의 계산방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 | |
|--|---|
|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
|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Tip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창업·합병·분할 발생 당일부터 기업 규모를 산정하여, 주된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의 산출방법에서 언급한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각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배·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상의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는 기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주된 업종을 비교해 최종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자산총액 기준

- 「중견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인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자산총액(계)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를 말하며,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 |
|-----------------------|-----------------------------|
|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 |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 16 A기업은 음료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평균매출액은 900억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 제조업 분야에서 50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원일 때 중견기업인가요? ➡ 네

→ 음료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된 업종은 음료 제조업(C11)이며, A기업의 3년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를 충족하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17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19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0년 5월 15일에 평균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20년 4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18년 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Q 18 인력 파견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인 경우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인력 파견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규모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15년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업종의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 근로자는 기업규모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 19 2018년 5월에 대기업으로부터 분할한 S/W 개발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연도별 매출액이 2018년 400억원, 2019년 850억원인 경우 2020년(2019년 결산기준) 적용시점에서 중견기업인가요? ➡ 네

→ S/W 개발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J)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입니다. 그러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9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은 850억원이므로 중견기업입니다.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초과)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 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이거나 관계기업과 합한 규모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Tip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적용합니다.

Tip 관계기업 제도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영리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독립성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 개별기업이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Tip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분 소유비율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후반부 ‘중견기업 제외대상’에서 상세하고 다루고 있으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기업이 됩니다.

Tip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 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인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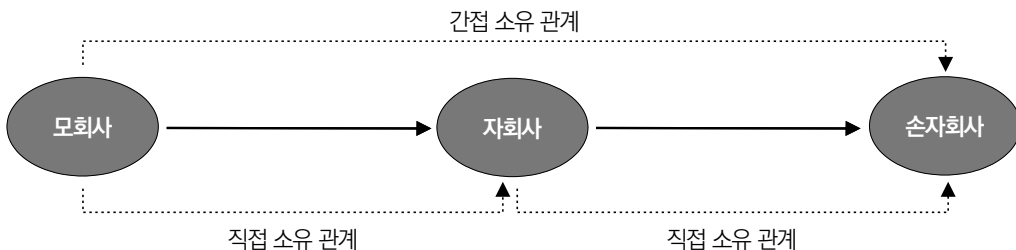
Tip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이 때, 최대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대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Tip 친족이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의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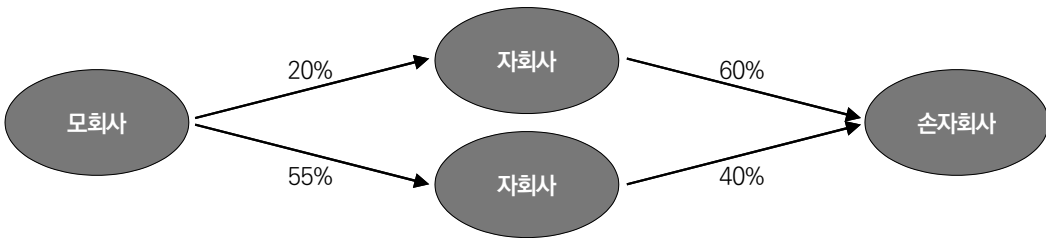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100% × 60% = 60%**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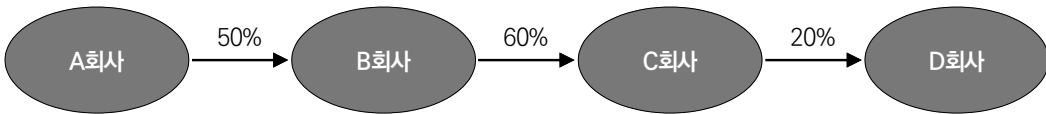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 60% = 24%**

사례 3



모회사의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 60%) + (100% ×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100% × 100% × 20% = 20%**

자주하는질문(FAQ)

Q 20 2018년 6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A기업이 중소기업 B의 지분을 40%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2016년 4월 28일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피출자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최초 지분관계만 적용됩니다.

Q 21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은 800억입니다. A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B기업이 35%, C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A사는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B기업이 A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대출자자가 아니고 A기업이 해당업종(C17)의 매출액 기준(1,500억원)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기업의 대표 이사가 B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22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대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 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3 중소기업인 A기업(유한회사)의 지분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 70%를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네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24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3개년 평균매출액이 300억원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인 B기업이 A기업의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6.30.) 제3조2 나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 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배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인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준용하여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Tip **외부감사대상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주권상장법인(예정법인 포함)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관계기업에 속한다고 하여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관계기업 간 주식 등 소유 비율 및 구조, 시기, 업종 등에 따라 기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종속기업을 가진 지배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하나, 지배기업 1곳만이 관계기업인 종속기업은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인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이었던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시점이 3개 사업연도 이내인 경우 종속기업은 곧바로 중견기업이 되지 않으며, 3년 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판단 및 적용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인가?

② 주식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① 지배·종속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대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Tip**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종속기업만을 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등의 소유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개인을 이 책에서는 특수관계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Tip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최대출자자 결정 시, 지배기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은 그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판단. 또한 유형별로 최대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 존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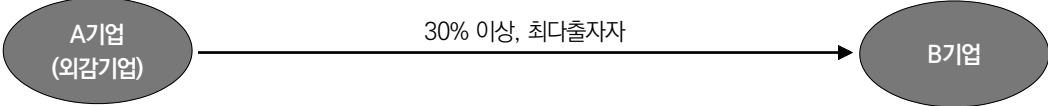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합니다.

| | |
|---|----------------------|
|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 |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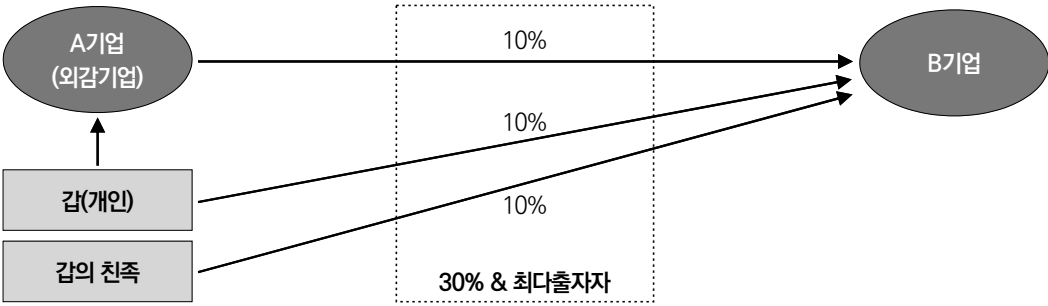
유형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사례 1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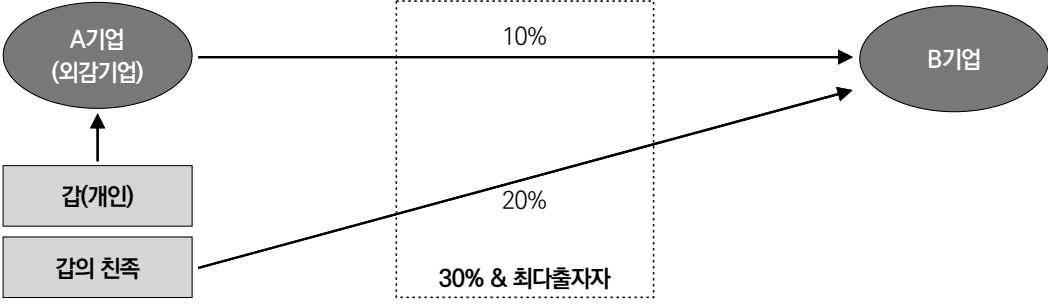
사례 2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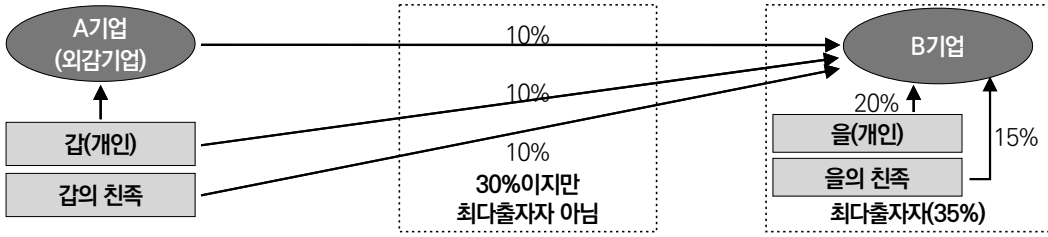
사례 3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4



※ 갭(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갭 및 갭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관련이 없는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최다출자자임 ⇨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유형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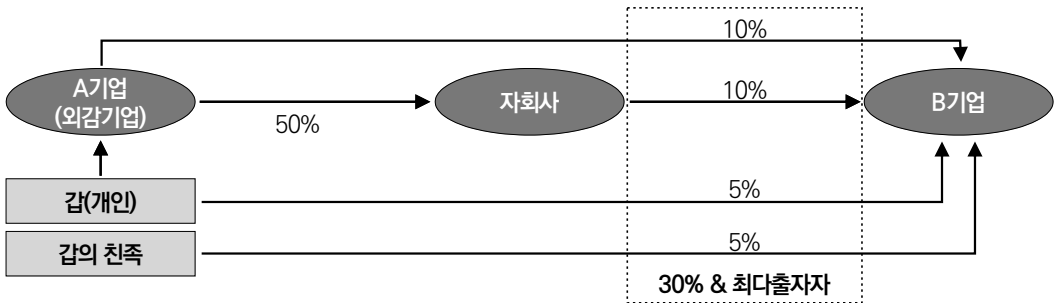
사례 1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유형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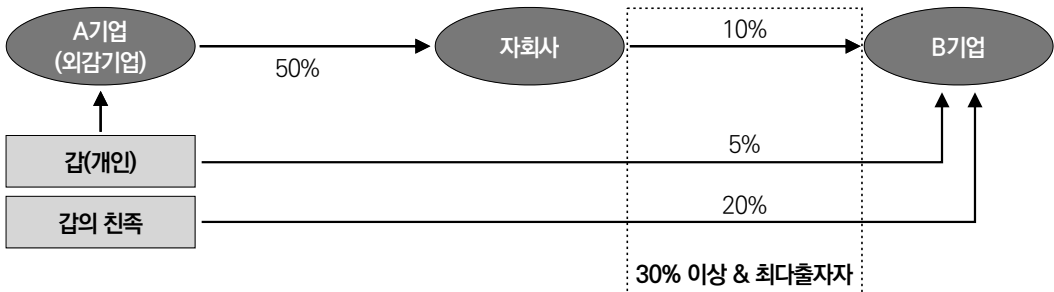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1,2 및 B기업),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유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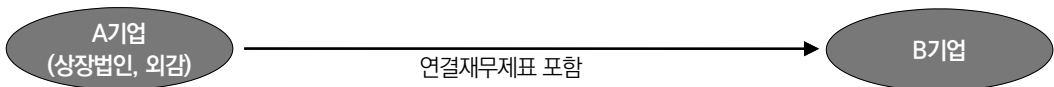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인 A기업이 B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인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3조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 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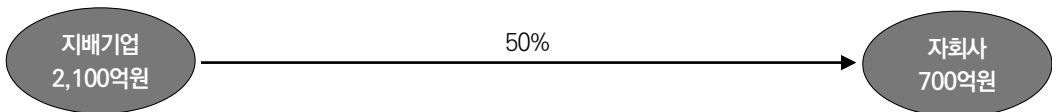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이 되더라도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는 방식과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Tip**
1. 과거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간의 규모 합산 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적용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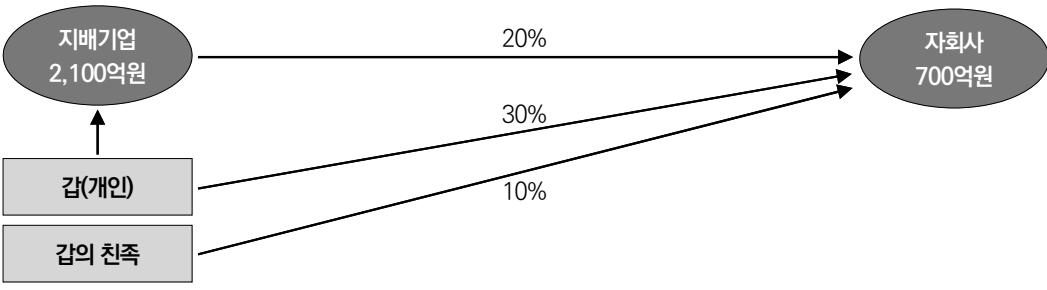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로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유형 ①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700억원) = 2,800억원
- 자회사 : 자회사(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 = 2,800억원

유형 2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700억원×20%) = 2,240억원
- 자회사 : 자회사(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20%) = 1,120억원
-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소유비율만으로 산정

유형 3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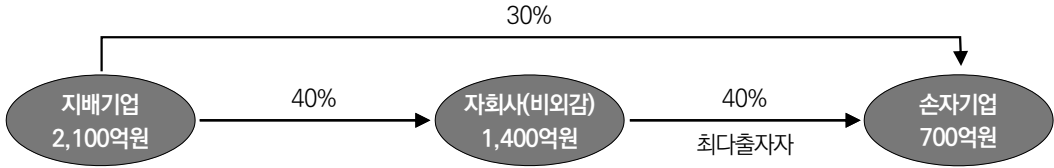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 + 손자기업(700억원×40%) = 3,780억원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100% × 40% = 40%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 + 손자기업(700억원×40%) = 3,78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지배기업(2,100억원×40%) = 2,100억원
- ※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 손자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

유형 4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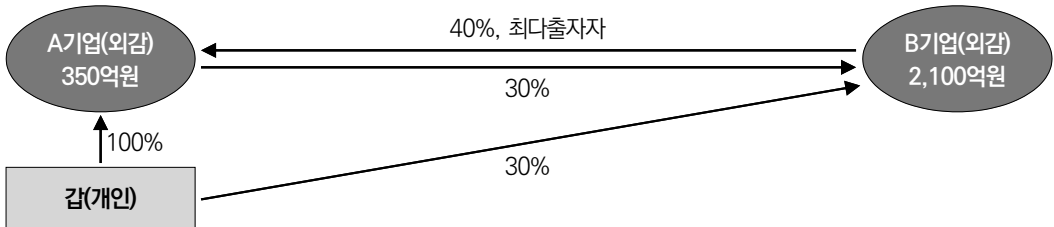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손자기업(700억원×24%) = 2,828억원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40% × 60% = 24%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모회사(2,100억원×40%) = 2,2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24%) = 1,204억원

유형 5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손자기업(700억원×46%) = 2,982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40%) = 46%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40%) = 2,2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46%) = 1,666억원

유형 6 기업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A기업 : A기업(350억원) + B기업(2,100억원×40%) = 1,190억원
- B기업 : B기업(2,100억원) + A기업(350억원×40%) = 2,240억원

Tip 상호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주식 소유비율이 큰 값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자주하는질문(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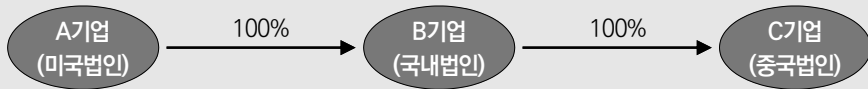
Q 25 주된 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A기업은 1,700억원, B기업은 2,000억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된 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된 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26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인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Q 27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요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 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Q 28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대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요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와의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29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요

→ 관계기업은 기업 간에 주식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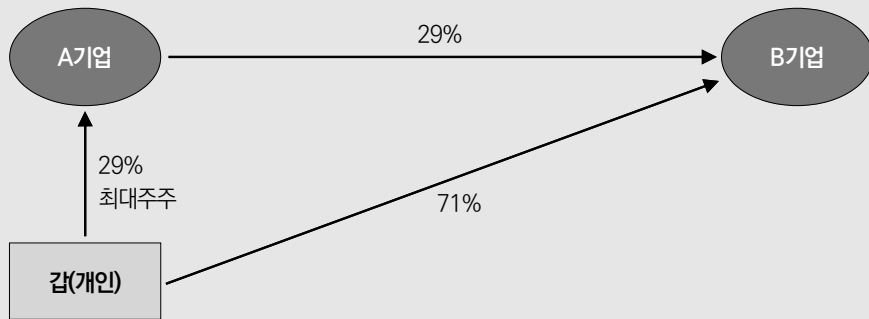
Q 30 A기업(지배기업, 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종속기업, 3월 결산법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2019년 7월 15일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다만,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기업은 2019년 7월 15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Q 31 3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중견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30% 최대출자자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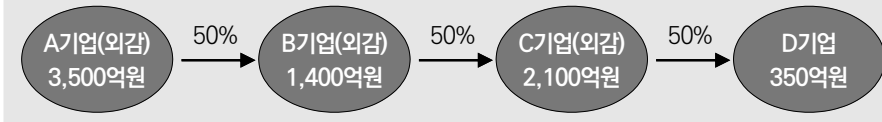
→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형식적 소유(50%미만 소유)로서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의 30%를 합산하므로(3,000억 원) B기업은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여 중견기업입니다.

Q 32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요



→ 개인(갑)은 A기업의 최대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대출자자가 아니므로 A,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33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 최대 상·하 2단계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① 3,500억원 + {② (1,400억원) + ③ (2,100억원 × 50%)} = 5,950억원
- B기업 : ② 1,400억원 + {① (3,500억원) + ③ (2,100억원) + ④ (350억원 × 50%)} = 7,175억원
- C기업 : ③ 2,100억원 + {① (3,500억원 × 50%) + ② (1,400억원) + ④ (350억원)} = 5,600억원
- D기업 : ④ 350억원 + {② (1,400억원 × 50%) + ③ (2,100억원)} = 3,150억원

Q 34 A기업(6월 결산법인)이 B기업(2019년 2월 1일 창업,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019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20년 4월 1일 증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6.1.1.~2018.12.3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2019.4.1.~2020.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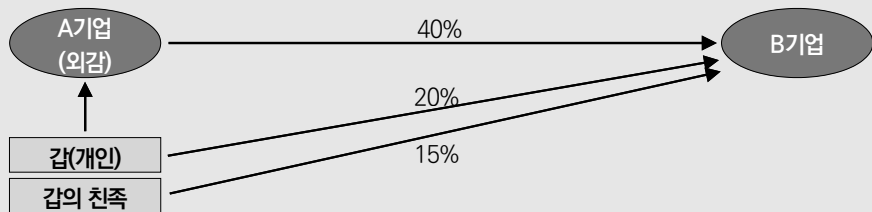
Q 35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에서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창업일·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순 지분변동은 종전처럼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다라도 다음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2015년 이후에는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36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2014년 3월에 분할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기업과 B기업 간 규모를 합산하려고 합니다. A기업의 규모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분할시점으로 판단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을 그대로 활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A기업의 매출액 산정은 기존법령이 적용되는 2015년 3월 31일까지는 A기업의 2013년 말일 기준의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에 분할한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므로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Q 37 운수업을 영위하는 A기업(3년평균 매출액 700억원, 자산총액 900억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기업(3년평균 매출액 6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기업은 중견기업 입니까? ➡ 네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75%로서, 30% 이상 최대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②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자산총액이 120억원을 초과)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③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700억원) + B기업(600억원×40%) = 940억원
 - B기업 : B기업(600억원) + A기업(700억원×40%) = 880억원
- ④ A, B기업 모두 관계기업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를 충족하므로 중견기업입니다.

Tip 관계기업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업종은 둘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4 중견기업 제외대상

①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08년 7월 이후 “5조원” 이었다가, '16년 9월부터 “10조원”으로 상향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21년 12월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자산총액 지정기준을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제7항에 따라 중앙회 계열 회사가 「공정거래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1개(소속회사 2,612개)이며, 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0개(소속회사 1,742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또는 제외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이 발송되므로, 관련 부서에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또는 제외 사유 발생일 즉시 기업 규모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았던 기업이 유효기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될 경우, 그 즉시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 현황 (‘21년 5월 1일 기준)〉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회사수 (단위 : 개) | 공정자산총액 (단위 : 십억원) |
|---------------------|-------|-----------|-------------------|----------------------|
| ※ 1위~40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 | |
| 1 | 삼성 | 이재용 | 59 | 457,305 |
| 2 | 현대자동차 | 정의선 | 53 | 246,084 |
| 3 | 에스케이 | 최태원 | 148 | 239,530 |
| 4 | 엘지 | 구광모 | 70 | 151,322 |
| 5 | 롯데 | 신동빈 | 86 | 117,781 |
| 6 | 포스코 | (주)포스코 | 33 | 82,036 |
| 7 | 한화 | 김승연 | 83 | 72,898 |
| 8 | 지에스 | 허창수 | 80 | 67,677 |
| 9 | 현대중공업 | 정몽준 | 33 | 63,803 |
| 10 | 농협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 58 | 63,552 |
| 11 | 신세계 | 이명희 | 45 | 46,409 |
| 12 | 케이티 | (주)케이티 | 48 | 37,701 |
| 13 | 씨제이 | 이재현 | 79 | 34,676 |
| 14 | 한진 | 조원태 | 31 | 33,600 |
| 15 | 두산 | 박정원 | 22 | 29,659 |
| 16 | 엘에스 | 구자홍 | 58 | 25,243 |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회사수 (단위 : 개) | 공정자산총액 (단위 : 십억원) |
|---------------------------|----------|-----------|-------------------|----------------------|
| 17 | 부영 | 이종근 | 23 | 23,321 |
| 18 | 카카오 | 김범수 | 118 | 19,952 |
| 19 | DL(舊 대림) | 이준용 | 36 | 19,627 |
| 20 | 미래에셋 | 박현주 | 38 | 19,333 |
| 21 | 현대백화점 | 정지선 | 25 | 18,313 |
| 22 | 금호아시아나 | 박삼구 | 27 | 17,442 |
| 23 | 에스-오일 | 에스-오일(주) | 2 | 15,795 |
| 24 | 셀트리온 | 서정진 | 8 | 14,855 |
| 25 | 한국투자금융 | 김남구 | 30 | 14,649 |
| 26 | 교보생명보험 | 신창재 | 12 | 14,413 |
| 27 | 네이버 | 이해진 | 45 | 13,584 |
| 28 | 에이치디씨 | 정몽규 | 29 | 13,549 |
| 29 | 효성 | 조현준 | 50 | 13,281 |
| 30 | 영풍 | 장형진 | 27 | 13,170 |
| 31 | 하림 | 김홍국 | 55 | 13,044 |
| 32 | 케이티앤지 | (주)케이티앤지 | 10 | 12,777 |
| 33 | 케이씨씨 | 정몽진 | 18 | 12,277 |
| 34 | 넥슨 | 김정주 | 18 | 11,998 |
| 35 |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주) | 5 | 11,375 |
| 36 | 넷마블 | 방준혁 | 23 | 10,703 |
| 37 | 호반건설 | 김상열 | 42 | 10,698 |
| 38 | SM | 우오현 | 58 | 10,450 |
| 39 | DB | 김준기 | 21 | 10,366 |
| 40 | 코오롱 | 이웅열 | 36 | 10,299 |
| ※ 41위~71위 공시대상기업집단 | | | | |
| 41 | 한국타이어 | 조양래 | 21 | 9,849 |
| 42 | 대우건설 | (주)대우건설 | 15 | 9,847 |
| 43 | 오씨아이 | 이우현 | 18 | 9,815 |
| 44 | 태영 | 윤세영 | 63 | 9,800 |
| 45 | 이랜드 | 박성수 | 33 | 9,509 |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회사수 (단위 : 개) | 공정자산총액 (단위 : 십억원) |
|-----|-----------|-------------|-------------------|----------------------|
| 46 | 세아 | 이순형 | 29 | 9,470 |
| 47 | 중흥건설 | 정창선 | 37 | 9,207 |
| 48 | 에이치엠엠 | 에이치엠엠(주) | 4 | 8,789 |
| 49 | 태광 | 이호진 | 19 | 8,767 |
| 50 | 동원 | 김재철 | 26 | 8,458 |
| 51 | 한라 | 정몽원 | 15 | 8,104 |
| 52 | 아모레퍼시픽 | 서경배 | 14 | 8,009 |
| 53 | IMM인베스트먼트 | 지성배 | 94 | 7,895 |
| 54 | 삼천리 | 이만득 | 42 | 7,841 |
| 55 | 금호석유화학 | 박찬구 | 15 | 6,665 |
| 56 | 다우키움 | 김익래 | 45 | 6,593 |
| 57 | 한국지엠 | 한국지엠(주) | 3 | 6,299 |
| 58 | 장금상선 | 정태순 | 19 | 6,263 |
| 59 | 동국제강 | 장세주 | 11 | 5,956 |
| 60 | 쿠팡 | 쿠팡(주) | 8 | 5,775 |
| 61 | 애경 | 장영신 | 37 | 5,589 |
| 62 | 반도홀딩스 | 권홍사 | 28 | 5,585 |
| 63 | 유진 | 유경선 | 52 | 5,528 |
| 64 | 하이트진로 | 박문덕 | 18 | 5,448 |
| 65 | 삼양 | 김윤 | 11 | 5,412 |
| 66 | 대방건설 | 구교운 | 43 | 5,326 |
| 67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정몽윤 | 21 | 5,322 |
| 68 | 한국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5 | 5,292 |
| 69 | 엠디엠 | 문주현 | 22 | 5,256 |
| 70 | 아이에스지주 | 권혁운 | 46 | 5,190 |
| 71 | 중앙 | 홍석현 | 56 | 5,014 |
| 합 계 | | | 2,612 | 2,336,420 |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의 피출자기업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기타 대기업으로 분류합니다.

-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10조원이나, '21년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지정기준을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 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 주주는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Tip 외국법인의 경우,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재무정보 및 주주명부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중견기업 판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별지4호 참조)

Tip 국내 기업 중 외국계 대기업의 투자를 받는 기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외국 모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하여, 이들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을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증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증권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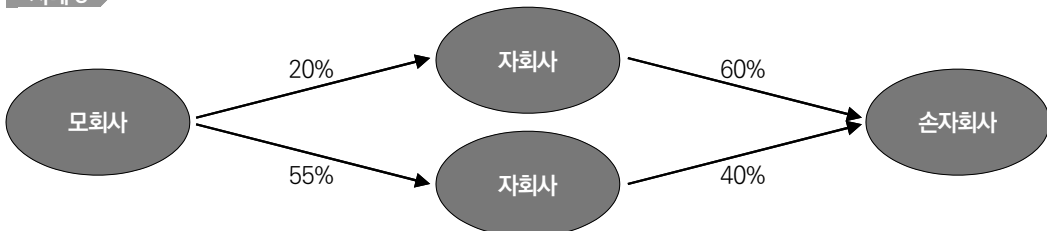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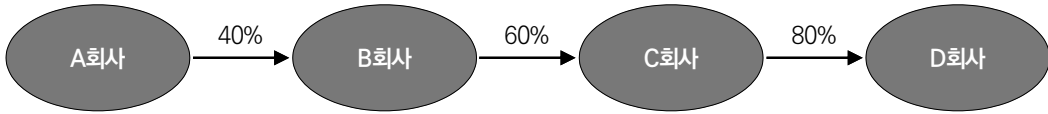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 60% = 24%**

사례 3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 60%) + (100% ×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60%) × 80% = 19.2%**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 38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국내법인 B기업과 외국법인 C기업이 각각 50:50으로 공동 출자한 법인입니다. C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일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네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B기업과 C기업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Q 39 A기업은 국내법인인 B기업(외감법인, 외국자회사)이 주식을 30% 소유하며 최대주주입니다. B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외국법인인 C기업이 100% 주식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사례1에 해당하는 경우로,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B기업이 외감법인이고 모회사인 C기업의 A기업에 대한 간접소유 비율이 30%이므로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Q 40 A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B, C가 각각 25%씩 지분을 소유하며 최대주주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 인가요? ➡ 네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대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B, C기업의 임원 등이 A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A기업이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하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41 A기업은 ○○시가 주식을 36%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기업입니다. A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700억원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데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일 시행)은 비영리법인을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으나 「중견기업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제외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 자산이 10조원 이상이라면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42 지배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나 보통주를 19%,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42.34%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지분관계에 포함되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나목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식(「상법」 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식은 지분관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43 A기업의 지배기업은 해외에서 설립한 B기업이고 B기업의 지배기업은 국내 C기업입니다. 세 기업이 관계기업에 적용되나요? ➡ 아니오

→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B기업은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며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44 A기업은 공영방송국의 자회사입니다. 공영방송국(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소유한 영리법인(자회사)도 공공기관인가요? ➡ 아니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2항에 의거,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Q 45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B기업과 10조원 미만인 C기업이 각각50%씩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B기업과 C기업은 A기업의 공동최대출자자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B기업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46 A기업은 해외사모펀드가 주식을 33%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출자자입니다. 이 경우 해외사모펀드기구의 자산총액 10조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나요? ➡ 아니오

→ 종전에는 중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A사는 해외사모펀드기구의 자산총액과 주식투자비율을 확인 해야 했으나, '16.8.30일부터는 최대출자자에서 해외사모펀드기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확인없이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해외사모펀드기구가 국내에 등록된 집합기구일 경우에만 해당)

Q 47 A기업은 경영부실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식의 35%를 소유하여 최대출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 종전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산업은행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16.8.30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8 중견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49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중견기업을 판정하는 독립성 기준인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지분관계에 있는 지배기업이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을 최대주주로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50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 별도재무제표

→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Q 51 2011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15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4년 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12년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매출액입니다.

Q 52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는? ➔ 중견기업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견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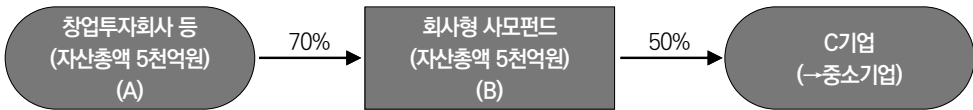
Q 53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농협중앙회가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피출자회사는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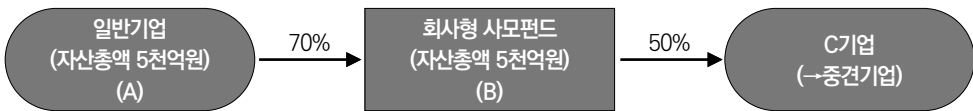
Q 54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견기업이 되나요?** ❌ 아니오

→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 경우,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함)에 해당하므로 펀드에서 출자한 기업은 다른 범주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등 이외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형 펀드의 출자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간접소유 규정에 따라 피출자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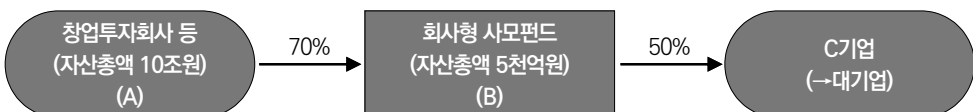
사례 1 C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사례 2 아래 그림에서 B펀드가 C기업의 최대주주이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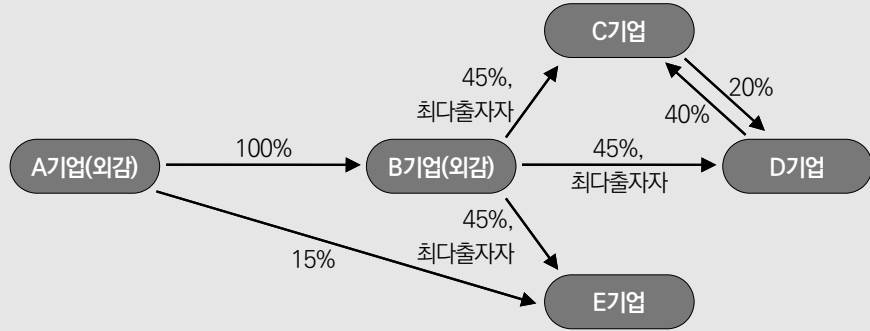


사례 3 아래 그림에서 C기업이 중견기업 규모에 충족한 중견기업이고 창업투자회사 A가 사모펀드 B를 통해 간접 소유한 경우, 지배기업으로 보는 A기업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이므로 C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55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 기업명 | Ⓐ 기업 | Ⓑ 기업 | Ⓒ 기업 | Ⓓ 회사 | Ⓔ 기업 |
|-------|-------|------|------|------|------|
| 평균매출액 | 3,000 | 600 | 87 | 330 | 174 |

→ 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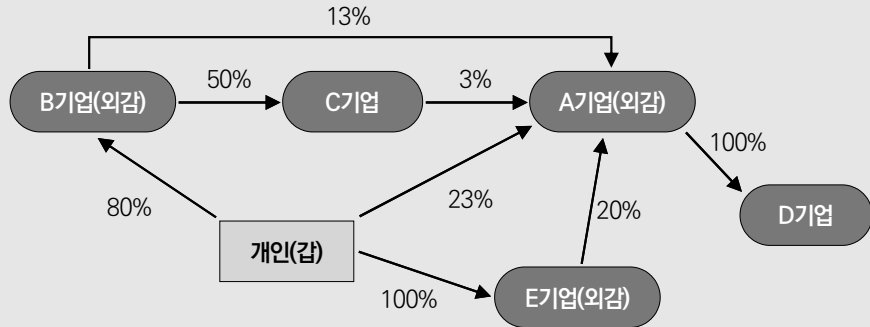
| 구분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
| A기업 | - | B(유형1), C(유형3), D(유형3), E(유형2) |
| B기업 | A(유형1) | C(유형1,2), D(유형1), E(유형1) |
| C기업 | A(유형3), B(유형1,2) | - |
| D기업 | A(유형3), B(유형1) | - |
| E기업 | A(유형2), B(유형1) | - |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 D기업의 경우처럼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A기업 = Ⓐ 3,000억원 + {Ⓑ 600억원 × 100%} + Ⓒ 87억원 × (100% × 45%) + Ⓓ 330억원 × (100% × 45%) + Ⓔ 174억원 × (15% + 100% × 45%) = 3,892억원
- B기업 = Ⓑ 600억원 + {(Ⓐ 3,000억원 × 100%) + Ⓒ 87억원 × (45% + 45% × 40%) + Ⓓ 330억원 × (45% + 45% × 40%) + (Ⓔ 174억원 × 45%)} = 3,941억원
- C기업 = Ⓒ 87억원 + {Ⓐ 3,000억원 × (100% × 45%) + Ⓑ 600억원 × (45% + 45% × 40%)} = 1,815억원
- D기업 = Ⓓ 330억원 + {Ⓐ 3,000억원 × (100% × 45%) + Ⓑ 600억원 × (45% + 45% × 40%)} = 2,058억원
- E기업 = Ⓔ 174억원 + {Ⓐ 3,000억원 × (15% + 100% × 45%) + (Ⓑ 600억원 × 45%)} = 2,244억원

Q 56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잔여 지분은 기타 소액주주로 간주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 기업명 | Ⓐ 기업 | Ⓑ 기업 | Ⓒ 기업 | Ⓓ 회사 | Ⓔ 기업 |
|-------|------|------|------|------|------|
| 평균매출액 | 900 | 600 | 300 | 240 | 150 |

→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중견기업 여부 |
|----------|----------------|----------------|---------|
| A기업(C20) | B(유형2), E(유형1) | D(유형1) | 중견 |
| B기업(F) | - | A(유형2), C(유형1) | 중견 |
| C기업(G) | B(유형1) | - | 중소 |
| D기업(C28) | A(유형1), E(유형3) | - | 중소 |
| E기업(H) | - | A(유형1), D(유형3) | 중소 |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 900억원 + {Ⓑ 600억원 × (13% + 3%) + (Ⓔ 150억원 × 20%) + (Ⓓ 240억원 × 100%)} = 1,266억원
- B기업 = Ⓑ 600억원 + {Ⓐ 900억원 × (13% + 3%) + (Ⓒ 300억원 × 100%)} = 1,044억원
- C기업 = Ⓒ 300억원 + (Ⓑ 600억원 × 100%) = 900억원
- D기업 = Ⓓ 240억원 + {(Ⓐ 900억원 × 100%) + (Ⓔ 150억원 × 20%)} = 1,170억원
- E기업 = Ⓔ 150억원 + {(Ⓐ 900억원 × 20%) + (Ⓓ 240억원 × 20%)} = 378억원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중견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2022년 기준 총 350개가 지정되었습니다. ('22. 1. 2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으로 16개 기관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20개 기관입니다.
 -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13개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82개 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209개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지정은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며, 최초 지정된 내역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인한 통폐합에 따라 연중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ip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www.alio.go.kr)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사이트로, 기관별 보고서, 공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Tip 지방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수도사업(마을상수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

-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행태나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하며, 전형적인 유형으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하며, 소속 직원은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 지방공사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설립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다른 점은 재원조달방법에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충당합니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경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방공사가 민간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것과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지정, 경영정보 등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ip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Local Public Enterprise Clean-Eye)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2007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II. 중견기업 확인

1.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
2. 특례대상 중견기업
3.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4. 기타 중견기업 관련 개념

II.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 및 절차, 신청·관계기업 제출서류, 유효기간,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1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

-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정부 민원사무)이며,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제도 참여시 활용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활용 예시〉

(인력·교육) 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기술·R&D)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전문연구요원, 특허 출원료 감면 등
 (수출·무역) 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특화서비스, 수출 및 수입 금융지원 등
 (경영·동반성장) 매출채권보험, 투자 및 운영 자금 대출 등

-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법 시행령」제15조에 근거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며, 「중견기업법」제26조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기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중견기업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활용 여부를 고려해 매년 발급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1 확인서 발급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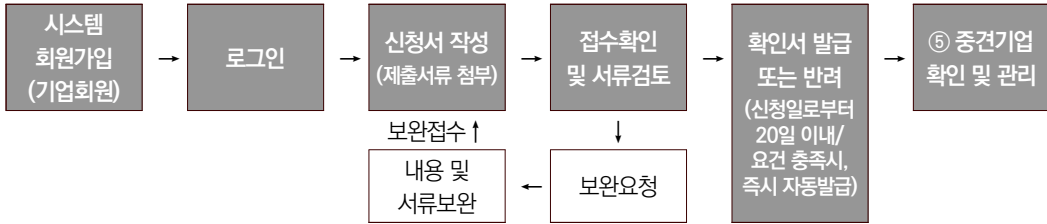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법인/개인사업자) 중 아래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①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 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대출자자에서 제외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⑥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공정거래법」 제1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 ⑧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 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여부 확인시, 기업의 주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신청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 지주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으로 분류되어 중견기업 제외대상 이나,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중견기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범주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본 책자의 I. 중견기업이란?에서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문과 중견기업 정보마당 자주하는질문(FAQ)을 참고하십시오.

범위기준 문의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묻고답하기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

2 확인서 발급절차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및 로그인 시 **사업장 본점의 전자거래비용 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회원가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가입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가입 신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또는 대표번호(02-3275-298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 회원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임직원 누구나 가능하나, 법인당 1개의 계정(ID/PW)만 생성되므로, 이미 가입되어 있으나 계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견기업 정보마당 내 ‘가입정보 조회/변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과거 연도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하지 않으므로, 매년 제출서류 준비 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는 본 책자의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3~7일이나, 신청 집중시기(3~6월)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 결과는 기업담당자에게 SMS 및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완요청에 따른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대부분 기업의 사업연도 결산월은 12월입니다. 따라서, 매년 3~6월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및 문의가 집중되어 중견기업 확인 관련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문의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묻고답하기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

3 신청·관계기업 제출서류

-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관계기업의 주주명부와 감사보고서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의 경우, 관계기업 제출서류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신청서 작성시, 하단에 ‘관계기업 추가’ 후 관계기업별로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Tip 관계기업은 신청기업과 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외 지배기업 및 국내 종속기업을 말합니다.

- 신청·관계기업의 제출서류를 준비하기 전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공통 안내 | 주주명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명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합병·분할시 발생 당일 기준 ▶ 요약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대체 가능(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주주는 법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개인 주주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미기재 ▶ 의결권 있는 주식만 비율 계산(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개인정보 제외, 특수관계 여부 기재 |
| | 감사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개별재무제표 확인)하고, 비외감 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 ▶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합병·분할 발생시 발생 당일 기준 ▶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경우, 파일 첨부 생략 |
| | 유형별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① 신청기업 제출서류 참고 2. 관계기업 제출서류 : ② 관계기업 제출서류 참고 |

- 중견기업 확인을 위해 안내된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의 주된 업종, 중견기업 진입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공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창업·분할·합병 등에 따른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신청·관계기업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연도의 주주명부 및 감사보고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 신청시,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관계기업 추가(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 절차에 의해 검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업 제출서류

| | | | |
|---------------|--|--|--|
| 일반 |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주명부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3. (사업장 지점 추가시) 지점 사업자등록증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공문 | | |
| | 창업·합병·분할 | 해당 사업연도 | 1.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 주주명부 2. 발생 월 ~ 확인 신청 월별 매출액 증빙서류 |
| 직전 사업연도 | |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주명부 2.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
| 과거 5개 사업연도 이내 | | 1. 발생 연도 ~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주명부 2. 발생 연도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

- ※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시 **[관계기업추가]**를 눌러 관계기업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마쳤거나 유예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서 내 특이사항 란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제외사유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 ※ **창업·합병·분할 이후 중견기업 확인서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발생시기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 **중견기업 확인서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기업'의 '직전 5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중견기업 확인서 내 **본점 외의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점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② 관계기업 제출서류(신청기업과 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외 지배기업 및 국내 종속기업)

| | | |
|----|---------|---|
| 국내 | 지배·종속기업 |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주명부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3. (분할·합병만 해당) 발생 당일 자산총액 및 매출액 증빙서류(합병등종료보고서, 매출장부 등) |
| 국외 | 지배기업 | 1. 직전 사업연도 말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전체 지분구조 증빙 (예시) 직·간접 지배기업별 주주명부, 종속기업 명부 또는 전체 지분구조도 2.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별 자산총액(Total Assets) 증빙 (예시) Balanced Sheet(Seperate, Standalone) 상 Total Assets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대상 아님 |

- ※ 국외 지배기업 제출서류는 일반적으로 **전체 지분구조 및 자산총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최상위)지배기업의 Annual Report(영미권), 유가증권보고서(일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해당 영역만을 발췌하여 부분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원본파일**을 제출하십시오.(부분 발췌시 기업 식별 불가)
 - 영문(English) 및 일문(日文) 외 언어는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십시오.
- ※ 국외 지배기업의 제출서류 검토가 불가한 경우, 중견기업 확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전체 지분구조 및 자산총액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요령**」 **[별지1]의 [첨부2]**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담당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견기업 확인서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기업'의 '직전 5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서류 문의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묻고답하기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

4 확인서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월 기준으로 규모 또는 독립성을 판단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 단,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일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 |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 법인 설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지정 제외되고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 제외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Ti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기업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정 제외 공문을 첨부하십시오.

- 타법 개정 등에 의해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 충족할 경우, 해당 법령 시행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 (예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 6. 11. 시행)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법령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유효기간(1년)이 만료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관계기업 제출서류 준비 후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문의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묻고답하기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사업자등록번호
 - 나. 납입자본금
 - 다. 매출액
 -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3조(중견기업 기준) ①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3호)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 57 2015년 7월 3일에 창업한 A기업(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로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산정일)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 집니다. 산정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2016.1.1. ~ 2016.3.31.)이라면, 창업일 2015.7.3부터 2016.3.31까지 유효기간입니다.
한편, 산정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라면, 일반기업처럼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Q 58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5년 5월 30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중에 주식의 70%를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인 B기업(12월 결산법인)이 인수하였다면, 언제부터 중견기업이 되나요?

→ 개별기업의 크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제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주식 인수 시점에서 지배기업인 B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4.12.31.) 현재에는 두 기업이 주식 소유 관계가 없으므로 즉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5년 말일까지 두 업 간 지분관계가 유지된다면 2016년 4월 1일부터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Q 59 LED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100억원입니다. 2015년 8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 A사는 개별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므로 2015년 8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될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조건 외의 다른 범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날부터 중견기업에 다시 편입됩니다.

Q 60 2010년도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의 2015년도 중견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 2015년도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3, 2014년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중견기업입니다.

2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12조부터 제17조의8까지 중견기업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지원사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중소기업 유예는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 특례대상 중견기업의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특례에 따라 모두 충족해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특례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상이하므로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8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대상 중견기업 요건〉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 * 지원사업별 특례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준을 확인할 것

-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중견기업 확인서입니다.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시 특례여부 확인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에 특례 요건 충족여부가 명시되어 발급됩니다.
 - 이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 정보마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과거 연도의 규모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담당자가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여부 문의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묻고답하기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14조(대기업인 이력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력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력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6조(중소기업 음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중견기업 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1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자금·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Tip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는 결산이 끝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 유예를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Tip 2016년 4월 28일부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유예를 1회로 한정하여,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유예 적용 이후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곧바로 중견기업이 됩니다.

Tip 다만, 이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거나 유예 중인 기업이라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면 유예 이력에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중소기업 유예제의 사유별 개정연혁〉

| 유예제외 사유 | 도입 및 개정연혁 |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7. 1.) 유예제외 |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7. 1.) 유예제외 (‘16. 4. 5.) 중소기업이 유예중인 기업과 합병한 경우 당초 유예기간 허용 |
| 유예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기준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1. 1.) 유예제외 |
| 창업한지 1년 이내에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7. 1.) 유예제외 (‘15. 1. 1.) 유예허용 |
|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 12.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시 유예제외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 (‘20. 6.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시 유예제외 |
| 독립성(직·간접)기준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 5. 20.)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30%)일 경우 유예제외 (모든 독립성기준 초과 시 유예제외) (‘16. 4. 28.)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유예허용 |
| 독립성(관계)기준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1. 1.) 관계기업 성립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경우 유예제외 (관계기업 제도 도입) (‘14. 1. 1.)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유예허용 (‘15. 1. 1.) 모든 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시 유예허용 |
| 상한기준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1. 1.) 유예제외 (‘15. 1. 1.) 유예허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문의 : 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가능

2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 기업의 규모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을 늦추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은 개정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 일자를 미래의 시점으로 정하여 개정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을 두는 방법이며, 경과조치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14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시행일을 7개월 가량 늦춰서 2015년 1월 1일 시행함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하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8년 3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인 경우 또는 경과조치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 기업부 소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과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이었어야 하며, ‘개정 법령’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유예중인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본래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만을 의미합니다.
 - 개정 규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당해 법령에서 개정된 조문을 의미하는데,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경과 조치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과조치를 받은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경과조치 기간이 소멸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경과조치가 3년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예기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유예기간 | 경과조치 |
|---------|--|--|
| 적용사유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 적용기간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 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 (종료일을 정함) |
| 적용제외 대상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경과조치 적용 문의 : 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가능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2014.4.14.>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자주하는질문(FAQ)

Q 6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13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규모기준(근로자 300명, 자본금 8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부여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14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Q 62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12월 결산)은 2014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2014년 3년평균 매출액은 850억원입니다. A기업은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 A기업의 경우 2015년 4월 1일 이후 개정법령(음료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5302호, 2014.4.14.) 제2조제1항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경과조치에 해당)됩니다.

Q 63 '15년 3월 31일로 유예가 종료되는 유예 3년차 기업입니다. '16년 기업규모를 판정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경과조치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에 있는 유예기간 중 기업은 경과조치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경과조치는 개정 이전 규정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 한해 부여됩니다.

Q 64 A기업은 종전 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6년에 처음 중견기업 판정을 받게 된다면 경과조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경과조치는 '15년 개정 규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되는 기업에 한해 '15. 4. 1. ~ '18. 3. 31.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A기업이 '16년에 처음 중견기업 확인을 받았더라도 '15년 개정 규정에 의해 중견기업이고 '16년에도 중견기업이라면 남아있는 경과조치 기간은 '16. 4. 1. ~ '18. 3. 31.입니다.

Q 65 '16.3.31일 유예가 종료되는 유예 2년차 기업입니다. 개정 규정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할 시 곧바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종전에 받은 유예기간 종료시 중견기업에 기준에 적합하다면 곧바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사가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후('17년)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이전 유예와 상관없이 '15년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유예를 인정합니다.

4 기타 중견기업 관련 개념

1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견기업 진입 1~3년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 요건〉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금액 규모)은 기준연도별로 비율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 기준연도 | 연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규모 |
|------|--------------------------------|
| 1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75 |
| 2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
| 3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기준연도”란 종전의 연차(1년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를 말한다.

* “기준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경쟁입찰 참여 특례 해당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서 별도 발급하고 있으니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중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이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표1]에서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을 업종에 따라 800억원 미만 ~ 3,000억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등의 위탁을 한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미만인 중견기업은 아래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1항~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원사업자) 요건〉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①'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동 확인서 내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충족여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충족여부는 원사업자 등에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법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동법제24조의2제2항각호제외)에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단, 대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법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역시, 대기업의 일부로 분류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에만 사업금액의 하한을 다르게 적용하며, 이 외의 중견기업은 대기업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합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 | 사업금액의 하한 |
|------|----------------------------|----------|
| 중소기업 | | - |
| 대기업 |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 20억원 이상 |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 80억원 이상 |

*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 관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법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산업지원실 산업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서는 산업 분류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항 따른 중소기업 및 동법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 5. 정보통신업 | J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N76 제외)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200명 이하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100명 이하 |
| 13. 그 밖의 업종 | |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천억~5천억원 미만, 업종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란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합니다. 조세특례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각각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특례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에 관한 상세 내용 및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매년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알기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III. 중견기업 후보기업

III.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구분을 위한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은 「중견기업법 시행령」의 별표1을 확인하시고,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은 「중견기업법 시행령」의 별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중견기업 지원사업 중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매출액 550억원 이상 |
| 22. 수도업 | E36 | |
| 23. 건설업 | F |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 25. 음료 제조업 | C11 |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매출액 400억원 이상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매출액 300억원 이상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부동산업 | L | |
| 42. 임대업 | N76 | |
| 43.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 \sqrt[n]{A/B} - 1$$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주요 관련 법령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중견기업 확인요령」
- ▶ 「중소기업기본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은 국내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 ▶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산업통상자원부)
- ▶ 2018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벤처기업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발행일 | 2022년 2월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T. 044-203-436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성장지원본부
(T. 02-3275-2994 / 대표번호)

인쇄 | 경성문화사(02-786-2999)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